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 선고 2021가단50943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국중권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김명보, 이인영

변 론 종 결 2022. 11. 4.

판 결 선 고 2022. 12. 2.

주 문

1.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9.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22. 9.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외 C과 소외 망 D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피고가 소외 망 D을 단독으로 상속한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선택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C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2018. 8. 28. 2,4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았고(대출기한 39개월, 월 납입금 519,371원, 이자 연 20.9%, 지연배상금율 연 23.9%), 원고는 2020. 4. 20.경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2020. 3. 31. 기준 대출원금 19,135,200원 및 그날까지의 지연손해금 581,196원 등 채권 일체)을 양수하였으며,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262865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4. 29.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0,448,428원 및 그 중 19,135,200원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1) C의 부친인 F이 2019. 7. 19.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3/9), 자녀인 H(2/9), D(2/9), C(2/9)이 있었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F이 소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이고, 위 상속인들은 2019. 9. 2. 이 사건 부동산을 D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이 사건 부동산 외에 2필지의 상속재산이 더 존재하였는데, 그

부동산들은 G, H가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3)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11.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은 F이 사망한 '2019. 7.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재되어
있다).

4) 그런데 이후 D이 2020. 2. 25.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D을 전부 상속한 피고 앞으로
2020. 7. 2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인 2019. 9. 11. 소외 회사에 대한 양수금 채무 및 I카드, J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19. 5. 27.경 I카드에
대한 채무를, 2019. 5. 16.경 J은행에 대한 채무를 각 연체하였다(이와 관련한 연체등록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까지 계속되어 있었다). C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현재까지도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각 사실조회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소외 회사는 C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출원리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이후 이를 원고가 양수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2/9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D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D의 악의가 추정되며, D의 상속인인 피고의 악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2) 이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취지의 주장(구체적인 사정을 모른 채 단순히 D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뿐이다)을 하나, D은 C의 형제로서 C의 자산상태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D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고 선의인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D을 상속한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C과 피고(망 D)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인

C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인형준

별지목록

1. 경상북도 경주시

대 86㎡

2. 경상북도 경주시

대 37㎡

3. 경상북도 경주시

대 99㎡

4. 경상북도 경주시

대 32㎡

5. 경상북도 경주시

대 1㎡

